
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60호(2006. 5. 4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7일
도 봉 구 청 장

1.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문화시설	지역문화 복지시설	창동 643-5 일대	1,854.0	감) 1,854.0	-	2006. 5. 4. (서울시고시 제160호)	실효
폐지	문화시설	지역문화 복지시설	쌍문동 103-66	684.5	감) 684.5	-	2006. 5. 4. (서울시고시 제160호)	실효

2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

(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)

3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※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091-355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